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주의 요구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소방본부)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천안○○소방서 ○○○○과 지방○○○ ○○○

② 충청남도 ○○소방서 ○○○○과 지방○○○ ○○○

③ 충청남도 ○○소방서 ○○○○과 지방○○○ ○○○

④ 충청남도 ○○소방서 ○○○○과 지방○○○ ○○○

⑤ 충청남도 ○○소방서 ○○○○단 지방○○○ ○○○

⑥ 충청남도 ○○소방서 ○○○○과 지방○○○ ○○○

내 용

충청남도 천안○○소방서 ○○○○과 지방○○○ ○○○은 2016. 8. 11.부터 2017. 3. 7.까지, ○○소방서 ○○○○과 지방○○○ ○○○은 2014. 5. 2.부터 2015. 7. 15.까지, ○○소방서 ○○○○과 지방○○○ ○○○은 2014. 4. 3.부터 2015. 1. 15.까지, ○○소방서 ○○○○과 지방○○○ ○○○은 2015. 7. 16.부터 2016. 12. 31.까지, ○○소방서 ○○○○단 지방○○○ ○○○은 2015. 1. 16.부터 2015. 7. 15.까지, ○○소방서 ○○○○과 지방○○○ ○○○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천안○○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에서 각각인사담당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여오고 있는 자들이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3항¹⁾, 제9조제4항, 제10조²⁾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등 처분요구 시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① 징계위원의 구성, ② 징계등 의결의 요구, ③ 징계등의 사건통지, ④ 징계등 의결 기한, ⑤ 징계 대상자의 출석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충청남도 16개 소방서의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의 비위발생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진행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었다.

-
- 1) 「소방공무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가 되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2) 「소방공무 징계령」 제10조제2항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천안○○소방서는 지방○○○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사유로 2016. 12. 15. 징계의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차상위 계급자 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소방서는 지방○○○ ○○○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2015. 1. 13. 징계의결 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소방서는 지방○○○ ○○○의 내수면어업법 위반을 사유로 2016. 7. 7. 징계의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차상위 계급자 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 ○○○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2014. 12. 19. 징계의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차상위 계급자 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이를 결락하였다.

○○소방서는 지방○○○ ○○○의 구급차운행 중 교통사에 대한 사유로 2015. 6. 17. 징계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차상위 계급자 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 ○○○의 「선거법」 위반(선거관련 위증)을 사유로 2017. 5. 24. 징계의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차상위 계급자 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2016. 6. 22.자에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오다가 약 11월이 경과한 2017. 5. 24.자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 등 사건의 통지 규정³⁾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운영 중 징계절차 위반현황

연번	개최기관	징계대상자			사건통보	출석통지	징계의결	징계사유
		계급	성명	처분				
1	천안○○ 소방서	지방○○○	○○○	견책	2016-11-11	2016-12-13	2016-12-1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신체촬영)
2	○○ 소방서	지방○○○	○○○	감봉1월	해당없음	2014-12-16	2014-12-19	음주운전
3	○○ 소방서	지방○○○	○○○	불문 경고	2016-06-03	2016-07-05	2016-07-07	내수면어업법 위반
4	○○ 소방서	지방○○○	○○○	견책	해당없음	2015-01-12	2015-01-13	음주운전
5	○○ 소방서	지방○○○	○○○	불문 경고	2015-04-24	2015-06-15	2015-06-17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
6	○○ 소방서	지방○○○	○○○	정직1월	2016-06-22	2017-05-19	2017-05-24	선거법 위반(선거관련 위증)

※ 충남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에는 감사원·수사기관 등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나 그 밖의 다른 기관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등 처분요구서, 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수사기록 등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속 각 소방서에서 자체 징계위원회 운영 시 「소방 공무원 징계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